

##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9. 17

제 출 자 : 사 하 구 청 장

### 1. 제안이유

행정절차법시행(98. 1. 1)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시 처분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시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이유 제시,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개정함.

### 3. 관계법령

행정절차법 제21조

##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의견진술)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,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의견진술)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	<p>제3조(의견진술)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,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